

대면업무 최소화,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

<서울도시철도공사, 담당자 김혜상, 2574>

- 공사 관련 자회사, 퇴직자 업체 등 민간 불법유착관계 근절을 위하여 일정 사전 알림제를 통한 대면업무 최소화,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로 자체제도 운용

1. 추진배경

- “자회사, 퇴직자 업체만 유리한 계약?”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자회사, 퇴직자 업체 등에 ‘밀어주기’사업논란(2016.05.17. 일요신문)
- 권익위 반부패수범사례 ‘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’ (수범사례11번)
- 부서 직원에 한정된 청렴의식 개선을 넘어 민간업체와의 청렴의식 공유 필요

2. 주요내용

- 계약상대자 업무협의 일정 사전 알림제
 - 공사착공 시 업체 방문시기 조정 등 사전협의를 통한 대면업무 최소화
- 공사계약업체와 계약 시 우리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
 - 계약후, 착공전 확인서 제출로 불법유착관계 근절

3. 기대효과

- 대면업무 최소화를 통한 부정부패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
- 사전협의를 통한 방문횟수 조정 등 업체부담 경감
- 퇴직자 업체 등 민간업체와의 불법유착관계 근절을 통한 청렴

4. 기타사항

-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·정기적 수행 필요